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작성: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일시: 2011년 9월 23일

1. 개괄

2011년 8월 27~28일 '4차 희망의 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문제 해결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박2일 동안 서울시내에서 진행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평화로운 행사를 거듭 천명하며 8월 23일 서울시대 45군데 집회신고를 냈으나 8월 25일 경찰은 45 군데에서 단지 2곳¹⁾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통보를 했다. 8월 27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과 청계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에워싸고, 불심 검문을 하고 통행을 제한했다. 다음날 28일 경찰은 인왕산과 청와대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8월 27일과 마찬가지로 불심 검문을 하고 통행을 제한했다. 독립문과 한진본사로 가는 신고된 행진에도 잦은 해산명령으로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결국 물대포를 분사해 강제해산시켰다. 이후 경찰은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고, 이후 집회시위를 제약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3차 희망버스와 마찬가지로 4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은 △자의적인 집회불허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물대포를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한마디로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으로 통제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 공식 일정 및 당시 상황

- 1) “긴 말은 필요 없다” - 만민공동회
- 일시: 2011년 8월 27일(토) 오후 6시(경찰의 무대설치 방해로 늦어져 7시에 시작)
- 장소: 광화문 네거리(경찰의 집회 신고 불허로 청계광장에서 진행)
- 2) 행진
- 일시: 만민공동회 이후
- 경로: 청계광장->을지로->시청광장 근처->승례문->서울역->서대문->독립문공원
- 3) 문화난장
- 장소: 독립문공원
- 4) “세상을 여는 아침 산행” - 청와대 위에서 깔깔깔
- 일시 : 2011년 8월 28일(일) 오전 10시~12시(경찰의 산행 방해로 오전 6시경으로 당김)

1) 경찰이 허가한 집회는 독립문에서 한진본사와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한진본사이다.

- 장소 : 청와대 앞산 인왕산(경찰의 산행 방해로 인왕산 및 안산으로 일부 참가자 산행)
- 5) 행진
- 일시 : 2011년 8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 독립문공원->서대문->서울역->남영역->경찰 차벽 앞
- 6) 거침없이 하이킥
- 일시 : 2011년 8월 28일(일) 오후 2시(경찰의 산행 방해로 일정이 앞당겨져 낮 12시경으로 바뀜)
- 장소 : 한진중공업 서울 본사(경찰의 방해로 남영역 근처에서 진행)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경찰의 사전적 집회불허 통보

희망버스 기획단은 평화로운 행사를 거듭 천명하며 서울시대 45군데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45 군데에서 단지 2곳만 허가를 했을 뿐 나머지는 불허통보를 했다. 경찰이 현행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다. 공공질서 위협을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의 건수는 2007년 86건, 2008년 31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허가제 관행은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금지조치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관련 자료

-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래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유엔 문서 번호: A/ARC/17/27/Add.2) 중 최종 권고 집회의 자유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4차 희망버스에서도 8월 27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고, 경찰기동대 등 경찰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하게 경비했다. 8월 27일 광화문 광장에는 일명 ‘알박기’라고 해서 경찰력이 주둔했다. 또한 청계광장으로 진입하는 일민미술관 앞 인도에는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동하기에 불편을 겪었다. 8월 27일 저녁 무렵에는 청계광장 일대에도 촘촘히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광화문 네거리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사진설명] 청계광장에 경찰차량과 차벽트럭이 등 차벽이 설치되어 광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알 수 없다. -인권단체인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사진설명] 광화문 광장 안에 이른바 ‘알박기’라고 해서 경찰이 앉아 있다. 시민들이 지나 다니기에 불편하다. -인권단체인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차벽 설치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어려웠고, 집회 장면이 주변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집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했다. 게다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차량이 주차된 광경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집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다.

○관련 자료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라 줄임)에서는 2009년 5~6월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장 출입을 봉쇄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차벽 설치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또한 헌재는 통행제한행위가 개별적 집회금지를 넘어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차 희망버스기획단은 서울시내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으나 시내로 났던 집회는 모두 불허통보 했다. 가까스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했으나 옹통 차벽을 설치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② 청계천 만민공동회 전후로 경찰의 무대 설치 방해

8월 27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진행하려 했던 만민공동회를 경찰이 불허하자, 집회신고를 한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8월 27일 오후 3시경부터 무대를 설치하는 등 준비 시작했다. 오후 4시경 경찰은 “무대가 광화문 네거리를 등지지 않고 광화문 쪽을 향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병력을 투입해 무대 설치를 방해했다. 시민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을 등지고 무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해 충돌은 곧 멈추었다.

③ 경찰의 청계천 일대 봉쇄

8월 27일 경찰은 만민공동회 이후 청계천 초입부터 종로2가에 이르는 청계천 일대를 봉쇄함으로써 집회 장소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청계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과 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사진설명]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사거리에서 청계천 아래 쪽 보도로 행진을 벌이다가 인도로 올라 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고 있다. © 유성호2)



[사진설명] 청계광장에서 종로로 가는 모든 길목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피해 사례
8월 27일 밤 9시경~10시 사이 청계물길을 따라 가다가 광고, 청계천 3가 등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매우 위협적으로 대했다. 경찰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좁은 계단들에 지켜서면서 사람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막아서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좁은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난간으로 몰려 위험스럽게 느꼈다. 1천여명의 사람들이 좁은 계단과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경찰이 완력을 행사해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뻔했다. 계단 폭이 막히자 사람들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승강기로 올라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상 승강기 앞에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의 승강기 이용을 막았다.

④ 소결

경찰은 집회무대설치 방해,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차벽 설치, 집회 해산 이후 이동하는 참가자 봉쇄라는 형태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다. 집회무대설치 방향을 문제 삼은 것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할 거라는 경찰 측의 예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설치할 지, 어떤 내용을 풀어낼 지 등등은 경찰이 관여해 방해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경찰의 방해로 무대를 옮겨서 설치한 후에도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둘러쳐 자유로운 집회 참가와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게다가 집회 종료 이후 해산하는 참가자들이 청계천에서 올라오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집회 참가자와 청계천을 거닐던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정당한 이동권과 시설접근권에 대한 침해는 이튿날 집중적으로 반복된다.

3) 8월 28일 산행, 청와대 민원접수, 한진본사 행진

① '세상을 여는 아침 산행' 전후 경찰의 산행 방해와 불심검문

8월 28일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 등산을 예고하자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입산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27개 중대 2000여명을 등산로 10여 곳에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진행했다.³⁾ 이 과정에서 경찰은 등산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과 인왕산 인근 주민들의 출입까지 통제하여 불편을 끼쳤다.

28일 오전 인왕산 인근 서대문구 독립문 광장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경찰이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들의 인왕산 산상 시위를 막겠다며 경찰 27개 중대, 2,200명을 배치해 산 입구를 봉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전 9시께 산에 올랐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무악현대아파트 뒷편 오르막에 다다르자 경찰 10여명이 "목적지가 어디냐? 서울 사람이냐?"고 물으며 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20~40대에 깔끔한 등산 복장이 아닌 참가자는 산행을 막았다. 심지어 인왕산 주변에 사는 주민까지 저지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제동에 산다는 남문영(55)씨는 "오전 7시30분에 등산로 입구에 와서 주인이라고 했는데도 못 올라가게 했다. 다시 집에 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 항의를 해대니 겨우 보내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729.html

서울성곽을 따라 길을 우회해 15분을 올라 인왕산 능선 위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다다르자 더 이상 산행이 불가능했다. 닫힌 등산로 입구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경찰은 여기서부터 주민들의 입산마저 통제했다. 항의하는 주민에게는 “윗선의 지시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⁴⁾

한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7시께 인왕산과 안산에 올라 청와대를 내려다보며 “정리하고 철폐” 등의 현수막을 펼치고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오전 10시에 인왕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인왕산 산행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를 앞당겼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철 무악재 역에서 인왕산으로 나가는 출입구와 무악재역 인근의 등산 진입로를 봉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지하철 통로를 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에 막혀 등산을 하지 못했으나 새벽에 먼저 산행을 한 일부 참가자들은 안산 정상에서 ‘정리하고 철폐’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⁵⁾

무악재역에서부터 가로막힌 이들도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와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1시간 여 동안 무악재 역 1, 2번 출구에서 오도 가도 못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여기 이 통로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주위에 있던 참가자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나가도 위(인왕산 인근)에 다 막아놔서 못 올라간다”면서 “왜 막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경찰은 “불법집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일반 시민이면 (역사 안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⁶⁾



[사진설명] 무악재역 출입구를 막은 경찰에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항의하고 있다. ©프레스

4) <http://news.hankooki.com/page/society/201108/h2011082819215221950.htm>

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28133238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안(김윤나영)⁷⁾



[사진설명] '4차 희망버스' 둘째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역 출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인왕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 유성호⁸⁾



[사진설명] '4차 희망버스' 둘째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청구지번 아파트 앞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인왕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 유성호⁹⁾

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28133238

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사진설명] '4차 희망버스' 둘째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청구 아파트 앞에서 경찰들이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통제하자, 한 등산객이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¹⁰⁾

② 청와대 민원 접수 방해 및 경복궁역 봉쇄

8월 28일 4차 희망버스 참가자 3000여명은 청와대 민원실에 ▲조남호 회장 처벌 ▲정리해고 철회 ▲이명박 대통령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사태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3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민원접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력 배치해 경복궁역을 완전 봉쇄하고 청와대로 먼저 향하던 참가자 10명을 저지했다.¹¹⁾ 경찰은 경복궁역 바깥은 물론이고 역사 안까지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감시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법감금을 일삼았다.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11) <http://www.vop.co.kr/A00000427488.html>



[사진설명] 경복궁역사 앞에서 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썼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역사 안에서 불법감금 시키고 있다. - 사진제공 정택용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경복궁역으로 갔다. 지상에서도 아니고 지하 계단에서부터 출입을 봉쇄한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져도 막무가내다.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들에게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귀에 경읽기'다.

"다 아시잖습니까?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은 이게 전부다. 그리고는 출입구마다 죄다 막아선다. 경복궁역과 청와대 일대는 마치 전국에 있는 경찰을 청와대 사수대로 가져다놓은 듯 촘촘히 막아놓았다고 한다. 전철역 벽면에 붙어 있는 '소금꽃이 핀다'는 글귀를 본 것으로 만족하고 결국 독립문으로 다시 돌아왔다.¹²⁾

③ 소결

8월 28일 '세상을 여는 아침 산행'과 '청와대 민원접수'는 경찰이 인왕산 산행 통제, 무악재역, 경복궁역을 봉쇄함으로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산행과 관공서 민원접수 방식으로 이튿날 일정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경찰에 막혔다. 경찰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호회들이 함께 산에 올라서 우의를 다지는 것도 모두 불법시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관공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 모두가 지하철역 봉쇄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희망버스 참가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12)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249>

○관련자료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4) 8월 28일 독립문에서 한진본사까지 행진

①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희망버스 기획단은 집회신고를 해서 8월 28일 독립문에서 한진중공업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8시경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9시경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8월 28일 행진은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경찰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행진 내내 선두에 방송차를 배치해서 이른바 ‘미신고불법시위’ 경고방송을 주기적으로 했다. 하지만 집회신고 내용에는 이용가능 차로 개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차로를 이용한다고만 되어있었다. 경찰이 집회신고 이후에 보완통보를 통해 차로를 제한했다는 내용을 집회신고자는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경고방송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집회참여자들을 위협한 것이다.

행진과정에서 경찰청을 지나는 길에서는 아예 인도를 막아서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 제한을 받았고, 시민들이 차도로 걸어가야 했다.

② 한진본사 인근 차벽 설치와 채증

경찰은 45개 집회신고에 불허통보를 하면서도 독립문->한진본사 구간은 허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용한 구간이 독립문->남영사거리 구간이었다며 차벽을 설치해 적법한 행진을 방해했다. 경찰은 집회신고 이후에 보완통보를 통해 남영동 사거리까지만 허용했다고 하나 집회신고자는 이를 통보받은 바 없다.

경찰은 한진중공업 본사를 30m 가량 남겨두고 차벽을 세워 행진을 막았다. 희망버스 주최측은 한진중공업 본사 앞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남영사거리까지 집회 신고

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¹³⁾

8월 28일 오전 11시경 남영동 사거리에서 차벽으로 막혀 더 이상 행진이 어렵자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쉬거나 구호를 외쳤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계속 채증을 진행했다.

③ 물대포 직사로 강제해산

8월 28일 오전 12시경 적법하게 신고한 한진 본사까지의 행진이 차벽에 막히자 참가자들은 차벽 앞에서 준비한 마우리 행사를 열었고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하기 위해 물대포 사용했다. 경찰은 경직법을 근거법으로 명시하며 물대포를 쏘겠다고 위협했다. 처음에는 포물선을 그리며 물대포를 분사했으나 이후 장애인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직사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3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

경찰은 낮 12시 17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 모인 제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800여명(경찰 추산)을 해산시키기 위해 살수차 2대를 동원, 1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물대포를 발사했다.

경찰은 병력 700여명을 투입해 남영역에서 한진중공업 사옥 방면 4개 차선 70m를 점거한 시위대를 세 방향에서 에워쌌다. 이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위대와 대치하다 12시 10분까지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물대포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처음엔 살수차 1대로 하늘을 향해 경고성으로 2차례 물대포를 쏘았다. 12시 30분부터 경찰은 살수차 2대를 모두 이용해 집회 참가자는 물론 스피커 차량 등을 겨냥해 물대포를 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시위대는 우산과 비옷, 팻말 등으로 물줄기를 막으면서 행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최루액을 살포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보도와는 달리 사용했음) 시위대는 ‘비정규직’ 등을 적은 스티로폼 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오후 1시를 넘어 자진해산했다. 경찰의 연행이나 보수단체와의 큰 충돌은 없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한 데다 평화적으로 진행했는데도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반발했다.¹⁴⁾

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28133238

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29009001>



[사진설명]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있다. -출처 : 합동취재팀15)



[사진설명] 장애인에게 물대포 난사하자 막아서는 참가자들 -출처 : 합동취재팀16)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준비하자, 경찰은 앞 쪽에 장애인 2명과 10여명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앞 쪽에 장애인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은 “장애인은 위협하니 뒤쪽으로 빠지라”는 경고방송을 했다.

이후 경찰은 물포 차량을 추가배치해 희망버스 참가자들 왼쪽에 자리잡고, 앉아 있는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과정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사진기자들이 물대포에 직사로 맞기도 했다.17)

15)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11667>

16)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11667>

17)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11667>

8월 28일 강제해산을 위해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한 것은 2008년 촛불이후 서울에서는 3년 만의 일이다. 당일 집회와 행진은 신고 된 합법집회였음에도 경찰은 이른바 ‘미신고불법집회’라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회참여자들을 위협하더니 결국 물대포를 분사해 강제로 해산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할 만큼 집회에 위협 요인이 없었음에도 물대포를 분사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법집행이다. 또한 물대포를 발포할 때 사람을 향해 직사했고 물대포로 분사한 물에는 최루액도 섞여있었다.

○ 사례

경찰은 12시경부터 도로를 향해 물대포를 분사하고 이후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사했다. 장애인이 물대포 앞으로 가서 장애인을 향해 분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경고방송을 수차례하면서 마무리행사를 위협했다. 거침없이 하이킥 포퍼먼스를 할 때, 마지막 기자회견은 낭독 때에도 물대포를 분사했고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대포를 분사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할 때 사람을 향해 직사했다.

○관련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집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결

4차 희망버스 8월 28일 일정은 집회행진 중 경찰의 경고방송, 행진로 차단, 강제해산을 위한 물대포 사용으로 얼룩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전날 ‘만민공동회’에 대해 경찰이 부당한 제약을 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마지막 행진 관련한 경찰의 대응은 집회, 시위 참가자 보호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행되는 집회시위 신고제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진분사 앞까지 경찰에 행진신고를 해 일정이 조율된 사안을 경찰은 이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집회신고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방송, 차벽, 물대포 사용’ 수순을 밟은 것이다.

경찰은 집회자나 시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임박한 폭력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이 야기되기 전에는 집회를 강제해산 시켜서는 안 되며, 물리적 제압이 필요했는지, 물리적 제압시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 될 것이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대부분 비무장상태였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합법적인 집회신고가 되었던 집회에 물대포를 분사해 강제해산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5) 4차 희망버스와 출석요구서 남발과 경찰신문확인복장 미착용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엄청난 채증장비를 동원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4차 희망버스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경찰은 부산에서 3차례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서는 110명을 입건했고 134명에게 출석요구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회신고에 대해 합법추진,불법필벌의 기초 하에 관리를 해오고 있으면서, 집회.시위 중 적법한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도로점거 등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3차례 개최된 한진중공업 버스시위관련 수사대상자 244명 중 모두 110명을 입건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134명에 대해 출석요구 증에 있으며, 주최자 송○○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고 어제 4차 버스시위와 관련해서도 체증판독으로 신원확인된 주최자 등 11명에 대해 신속히 출석요구를 하는 한편, 그 밖에 도로점거하는 등 목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자들은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조치 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모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시위대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주최 참가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¹⁸⁾

추석 연휴를 전후로 4차 희망버스 출석요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다. 채증을 통해 확보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 '참고인' 등 이라는 형식으로 시민을 소환해서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하는 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인권단체들이 비판하자 경찰은 소환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신분인지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4차 희망의 버스기간동안 몇 명의 지휘관을 제외한 경찰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사복경찰이 채증을 진행하였다.

18) 경찰청 2011년 8월 30일자 보도자료, 경찰청 최근 집단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출처: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 관련자료

63. 특별보고관은 진압 경찰의 폭력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알고 있으나,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보고관은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모든 혐의를 독립적 기구가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64. 특별보고관의 방문 이후로, 모든 경찰복에 배지가 이름표가 부착되고, 경찰의 보호 헬멧을 착용한 경찰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래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rank La Rue」 유엔 문서 번호: A/ARC/17/27/Add.2) 중 집회의 자유

3. 마치며

9월 5일 경찰청은 서울 주요 도로에서 집회행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폭력시위나 장기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게 유사집회를 6개월~1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집시법도 경찰의 사실상 허가제 운영으로 국내외 인권단체 및 유엔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강력한 허가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2차~4차까지 희망버스에 나타난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관행은 경찰이 헌법질서를 실현하고자 만든 국가기구인지 의심하게 한다. 우리는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되도록 경찰이 집회시위관리 부분에서도 아래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희망 버스' 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경찰이 해야 할 5가지

1. 집회금지정보를 철회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
2. 신뢰와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공무집행을 위해 경찰의 신원을 표시할 것.
3.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불온시하지 말고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대화할 것.
4.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이동을 위해 노력할 것.
5.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조사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1. 불심검문을 통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가로막지 말 것.
2.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으로 위협하지 말 것.
 3. 차벽을 설치하지 말 것.
 4. 최루액을 탄 물대포를 쏘지 말 것.
 5. 최루액을 분사하지 말 것.
6.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연행하지 말 것.
7.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체증하지 말 것.
8.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때리지 말 것.
9.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지 말 것.
10.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말 것.